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구근”을 “구근(알뿌리)”로, “음용수”를 “먹는물”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(併記)하는 등의 방법으로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환경부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가축
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 제1호라목 중 “잔고량”을 각각 “잔량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건
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정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“명기하여”를 “적어”로 한
다.

제3조(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의 개정) 국립환경과학원 시험
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분야란 중 “인증시험 입회”를 “인증시험 참관”으로 하고, 같은
표 비교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입회”를 “참관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먹는물 수

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타목 중 “음용수”를 “먹는물”로 한다.

제5조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제7호 중 “잔고량”을 각각 “잔량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 제7호 중 “잔고량”을 각각 “잔량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8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굴착기

별표 21 제2호가목 참고의 제1호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7조(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나목1) 중 “노임단가”를 “임금단가”로 한다.

제8조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1항 중 “정부노임단가기준”을 “정부임금단가기준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다목 중 “부속체(종자, 구근, 인경, 주아, 덩이줄기, 뿌리)”를 “부속체[종자, 구근(알뿌리), 인경, 주아, 덩이줄기, 뿌리]”로 한다.

별표 5의2 제1호가목1) 중 “음용수를”을 “먹는물을”로 한다.

제9조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8 인건비의 산정기준란 중 “노임단가”를 각각 “임금단가”로 한다.

제10조(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음용수”를 “먹는물”로 한다.

제11조(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음용수”를 “먹는물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 중 “음용수”를 “먹는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의 제2호 중 “음용수”를 “먹는물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제목 중 “음용수”를 “먹는물”로 한다.

제12조(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4 중 “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2조제6호에 따른”으로,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, “조사하여야”를 “조사해야”로 한다.

별표 6의3 제1호가목1) 중 “노임단가”를 각각 “임금단가”로 한다.

제13조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의7 제3호 중 “지불할”을 “지급할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10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“명기된”을 “명확하게 적힌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“명기된”을 “명확하게 적힌”으로 하고, 같은 난 제3호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3호의3서식 앞쪽 ⑪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7호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보수) ① 법 제59조제1항 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<u>정부노임단가기준</u> 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75조(보수) ① ----- ----- <u>정부임금단가기준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) ① 영 제8조제1항 제2호, 같은 조 제3항·제4항,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시장(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	제5조(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음용수</u> 로 개발·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자재는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	4. <u>먹는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수질검사의 주기)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“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영 제14조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 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	제12조(수질검사의 주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음용수</u> : 2년. 다만,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	1. <u>먹는물</u> ----. ----- ----- 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4(토양정밀조사) <u>법 제2조 제6호의</u>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 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, 오염물질의 종류·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<u>감안하여</u>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<u>조사하여야</u> 하며,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제1조의4(토양정밀조사) <u>법 제2조 제6호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려하여</u> ----- ----- <u>조사해야</u> ----- ----- -----.